

상담 鄭基善 (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위원)  
 柳泰鉉 (公認會計士 · 대양회계법인)

### 기밀비 限度計算에서 資本金 근거계산은?

**문** 非營利法人인 醫療法人이 접대비와 기밀비의 限度計算을 함에 있어서 資本金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는지요? (경기도 K병원)

**답** (1) 營利法人인 株式會社 등은 資本金을 당해 사업년도의 매월말 현재의 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營利法人은 資本金의 増資가 있는 경우에는 病院에 증자시설을 등기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된 것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당초 설립시에 법인등기를 하며, 이 때에 최초 出資金과 기타 사항(法人名, 理事名 등)이 등기되나 그 후에 추가로 出捐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出捐 이외에도 外國이나 國內團體로 부터 資産을 受贈하는 경우에도 그만큼 資本金(기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이 나더라도 출연자에게 配當 또는 賞與處分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된 이익은 모두 유보되며 기본재산을 구성하게 됩니다.(단, 信用協同組合 등과 같이 배당하는 비영리기관은 예외적인 사례임)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경우 접대비나 기밀비의 한도계산을 위한 자본금은 기본금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純資金(총자금-총부채)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매월말 잔액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2) 法人稅法 시행규칙 제 1 조에서는 비영리 법인

의 자기자본계산에 관하여 규정하여, 제 1 항에서는 『收益事業의 資産의 합계액에서 資産(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 항에서는 『... 非營利事業에 속하는 資産을 收益事業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資産價額은 資本의 元入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時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2 항의 경우 時價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法人稅 基本通則 1-1-13(1)에 의거 法人稅法 시행규칙 제 16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鑑定機關의 시가감정가액이나 相續稅法 시행령 제 5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3) 매월말의 기본재산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月次決算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월차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전년도말 기본재산과 금년도말 기본재산 잔액을 더하여 1/2한 것이 평균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월차계산을 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의 항목에 대하여 年度中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赤字 또는 黒字기관에 따라 기본재산 잔액이 다음과 같은 事例가 발생합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을 年度中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 1 사례에서는 頁의 基本財産이 나타나며 12월말 결산을 하면 다시 頁의 基本財産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제 2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제 1 사례의 경우 합계는 △445 백만원으로 평균은 37.08 백만원(△445 ÷ 12월)으로 계산되나 이 보다

	(제 1 사례 - 赤字의 경우)	(제 2 사례 - 黒字의 경우)
전 년 도 말	△ 150 만원	+ 150 만원
금년 1 월 말	△ 130	+ 160
2 월 말	△ 105	+ 180
3 월 말	△ 95	+ 195
4 월 말	△ 75	+ 205
5 월 말	△ 50	+ 230
6 월 말	△ 30	+ 240
7 월 말	△ 15	+ 260
8 월 말	+ 10	+ 280
9 월 말	+ 25	+ 295
10 월 말	+ 50	+ 305
11 월 말	+ 80	+ 330
12 월 말	△ 110 만원	+ 180 백만원

는 전년도 말과 금년도말 잔액의 평균인 △ 120 백만원이 더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제 2 사례의 경우에도 합계가 3,010 백만원으로 평균은 250.83 백만원(3,010 백만원 ÷ 12월)으로 계산되나 이 경우도 年度末 잔액 평균인 165 백만원 { (150 백만원 + 180 백만원) ÷ 2 } 이 보다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1 사례의 경우 기본재산잔액이 眞의 잔액을 나타내면 0 으로 보게 됩니다.\* <담당 鄭基善>

### 營業外 비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稅務 내용은 ?

**문** 企業(병원포함)의 재무구조 개선을 稅制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非生産的 용도에 이용되는 借入金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무계산상 損金 인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세무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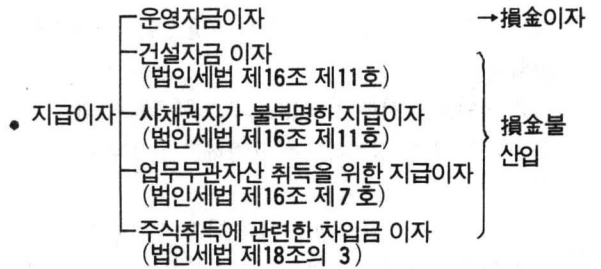
(1) 현행 세제상의 지급이자에 대한 損金是否認내용의 요약은 ?

(2) 지급이자 損金否認에 관한 세무계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 계산순위는 ?

(3)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

제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요? (경남 Y의료원)

**답** (1) 병원경영활동에 따른 부족자본은 타인으로 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금융비용(financial cost)을 지급하게 되므로 稅法上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損金是否認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대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됩니다.

① 직접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분명히 파악될 경우 이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며, ② 직접적인 소요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 算式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자산의 적수}}{\text{재고자산의 적수} + \text{업무무관자산의 적수}} = \text{손금불산입지급이자}$$

\* 위의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지급이자를 한도로 하여 손금불산입됩니다.

$$\text{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한도액} = \text{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times \frac{1}{365} \times \text{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이자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병원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동품, 고서화(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은 제외함) ② 의료법인의 이사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오락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 ③ 지상정착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지상정착물 면적의 7 배를 초과하는 토지 ④ 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다만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병

원구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는 제외). ⑤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 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 ⑥ 위의 각호 이외의 것으로 써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취득한 자산.

위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에 이용된 차입금 이자 및 이 자산과 관련된 유지비용 등은 損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그 제 5 항에 의해 다음 순위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이자

- ① 채무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②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③ 주식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
- ④ 건설자금 이자

위의 내용을 계산공식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이자총액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지급이자.....①

▲ ① ×  $\frac{\text{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text{재고자산의 적수} + \text{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이자.....② (법인세법 제16조 제 7 호

와 법령 제30조 제 3 호)

▲ ① - ② ×  $\frac{\text{주식취득자금의 적수와 (차입금 - (자기자본 × 3))의 적수중 적은 금액}}{\text{총차입금의 적수}}$   
= 주식취득자금이자..... ③ (법인세 및 제18조의 3)

▲ ① - ② - ③ ×  $\frac{\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text{재고자산의 적수} + \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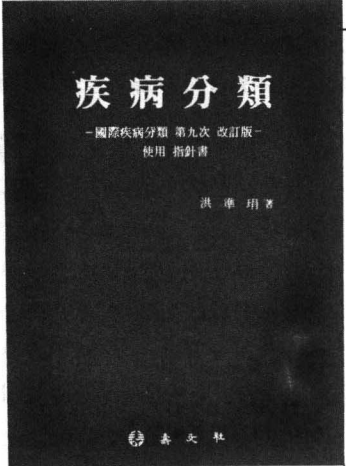
(3) 정부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세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자본의 증가에 의한 투자자본이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 기업내부유보를 저해하는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 다른 보완적 방법을 검토하며 (의료법인은 배당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비생산적 자금인 타법인주식취득,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이사에의 자금대여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인정을 규제하도록 하며,

▲ 기업투자재원의 조기회수지원을 위한 감가상각 제도를 보완하여 기계설비별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내용등은 회의를 통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담당 柳泰鉉)



\* 新刊안내 \*

疾病分類

洪準瑁 著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보, 특히 병원정보중에서 환자들에게 내려진 진단과 시행된 수술, 검사 등에 관한 자료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 제9차 개정판 사용지침서가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실장 洪準瑁씨에 의해 출판돼 질병분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됐다. 壽文社刊·菊版 2백18페이지·洋裝·값 3천5백원